

기관추천 특별공급(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신청 안내문

- **공급명** :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 **공급위치** : 경기도 여주시 교동 산9-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1층 ~지상 27층 7개동 605세대(일반분양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공** : 금호산업(주) **시행사** : 코리아신탁 **위탁사** : 하일건설(주)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총 일반분양 605세대, 특별공급 248세대 中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7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계	일반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일반 공급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84.9329	84A	84.9329	27.4784	112.4113	33.8419	146.2532	410	41	41	80	12	236
84.9329	84B	84.9329	27.4784	112.4113	33.8419	146.2532	168	16	17	34	5	96
98.9117	98	98.9117	31.5272	130.4389	39.4119	169.8508	22	-	2	-	-	20
136.7648	136	136.7648	46.4642	183.2290	54.4948	237.7238	5	-	-	-	-	5
계		51,951	16,808	68,759	20,700	89,459	605	57	60	114	17	357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

구분		84A	84B	98	136	합계
국가유공자		13	4	-	-	17
장애인	경기	7	3	-	-	10
	서울	4	2	-	-	6
	인천	4	1	-	-	5
장기복무 제대 군인		3	1	-	-	4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3	1	-	-	4
중소기업 근로자		4	2	-	-	6
우수 선수 기능인		1	1	-	-	2
북한 이탈 주민		2	1	-	-	3
합계		41	16	-	-	57

* 상기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5)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0.06.17.)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